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66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허종식
朴芝源 · 서영석 · 전종덕
이춘석 · 주철현 · 박 정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재 SNS나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온라인 대부광고를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현행 자율심의 체계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상의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의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12조의2제3항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제9조의5부터 제9조의10까지로 하고,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광고의 심의)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과 관련한 광고(이하 “대부광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이 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 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제9조의9제1항”을 “제9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의9제3항을”을 “제9조의10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9조의4제1항”을 “제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의4제3항을”을 “제9조의5제3항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의5제1항”을 “제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4(광고의 심의)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과 관련한 광고(이하 “대부광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u>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u> <u>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u> <u>3.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u> <u>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u> <u>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u> <u>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 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 <u>③ 협회는 매 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생략)</u>	<u>제9조의5(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현행 제9조의4와 같음)</u>
<u>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생략)</u>	<u>제9조의6(고용 제한 등) (현행 제9조의5와 같음)</u>
<u>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생략)</u>	<u>제9조의7(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현행 제9조의6과 같음)</u>
<u>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생략)</u>	<u>제9조의8(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현행 제9조의7과 같음)</u>
<u>제9조의8(차별금지) (생략)</u>	<u>제9조의9(차별금지) (현행 제9조</u>

<u>제9조의9</u>(대부업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생략)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u>제9조의9제1항</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u>제9조의9제3항</u>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의8과 같음) <u>제9조의10</u>(대부업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현행 제9조의9와 같음)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의10제1항</u>----- ----- ----- ----- 5. <u>제9조의10제3항</u>----- ----- ----- -----
---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u>제9조의4제1항</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u>제9조의4제3항</u>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 10. (생 략) ⑤ (생 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u>제9조의5제1항</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의5제1항</u>----- ----- ----- ----- ----- ----- ----- 5. <u>제9조의5제3항</u>----- ----- ----- 6.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9조의6제1항</u>----- -----
---	--

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하게 한 자 10의2.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 ----- 10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